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637

발의연월일: 2020. 10. 26.

발 의 자:정희용・추경호・金炳旭

김용판 · 김영식 · 지성호

전주혜 • 태영호 • 이채익

정진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새마을금고,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건전 육성을 위해 상호금융기관 간에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의 취득세 및 계약이전을 통해 양수한 재산의 취득세를 100% 면제하고 있으나,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의 경우 특례제한 규정에 의해 2021년 이후 85%만 감면될 예정 임.

그러나, 서민·소상공인 등을 회원·조합원으로 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은 부실조합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이전 방식이 아닌 합병을 통해 부실조합을 인수하고 있음.

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연감에 의하면 2016년~2018년 기간 동안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은 268건 6,662백만 원이나, 계약이전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은 0건임. 따라서,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면제도 계약이전으로 인한 취득세 면제와 동일하게 100% 면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2020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도래하는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의 감면 특례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과 서민·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177조의2제1항제2호). 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"제57조의2제2항(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)"을 "제57조의2제2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177조의2(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177조의2(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)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제한) ① -----또는 재산세가 면제(지방세 특 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 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해당 과 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 면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 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 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 (「지방세법」 제13조제1항부 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 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)을 적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(생략) 1. (현행과 같음) 2. 제7조부터 제9조까지, 제11 조제1항, 제13조제3항, 제16 조, 제17조, 제17조의2, 제20 조제1호, 제29조, 제30조제3 항, 제33조제2항, 제35조의2, 제36조, 제41조제1항부터 제6

항까지, 제50조, 제55조,	<u>제57</u>
조의2제2항(2020년 12월	31일
<u>까지로 한정한다)</u> , 제57	'조의3
제1항, 제62조, 제63조제	2항 •
제4항, 제66조, 제73조,	제76
조제2항, 제77조제2항,	제82
조, 제84조제1항, 제85조	의2제
1항제4호 및 제92조에	따른
감면	
②·③ (생 략)	

<u>제57</u>
조의2제2항
②·③ (현행과 같음)